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36
----------	-------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변재일 · 이학영 · 김의겸
박홍근 · 허영 · 서영석
박완주 · 정태호 · 양정숙
강준현 · 민형배 · 고용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 조성, 운용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콘텐츠 제작·유통·부가서비스 개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방송통신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간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해왔음.

그러나 ICT 기술 발전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변화 등으로 기존에 기금을 부담해온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EU와 캐나다 등 방송통신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하여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의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0항(중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 2. (생략)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분담금 4. ~ 6.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5항-----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 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⑥·⑦(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 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⑧ ----- ----- 제5항----- -----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 15. (생략)

<신설>

16. (생략)

② ~ ④ (생략)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제9항-----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